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호	22-44
--------------	-------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사무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마포구8호점 아현동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
- (가칭)마포구9호점 합정동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 필요성 :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현황

구 분	마포구 8호점 아현동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마포구 9호점 합정동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소재지	마포대로 167, B블럭 지하1층(공덕동, 공덕래미안5차)	양화로1길 108, 1·2층(합정동)
건물유형	무상임차	임차건물
규모	163.74㎡	135.12㎡
정원(예정)	25명	22명

위 치 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총사업비: 1,730,376천원(국 189,586 시 1,456,790 구 84,000)

(단위: 천원)

구 분	마포구8호점(아현동)			마포구9호점(합정동)			비 고
	합계	인건비*	운영비**	합계	인건비*	운영비**	
합 계	790,188	697,188	93,000	940,188	697,188	243,000	
2022년	61,525	53,775	7,750	74,025	53,775	20,250	5개월분
2023년	151,532	132,932	18,600	181,532	132,932	48,600	
2024년	155,520	136,920	18,600	185,520	136,920	48,600	
2025년	159,627	141,027	18,600	189,627	141,027	48,600	
2026년	163,858	145,258	18,600	193,858	145,258	48,600	
2027년	98,126	87,276	10,850	115,626	87,276	28,350	7개월분

* 인건비 산정 : 센터장1명, 돌봄교사 2명(서울시 평균 센터장 4급 14호봉, 돌봄교사 5급 4호봉 적용)

** 운영비 내역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아. 산출근거 : 2022년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1766(2022.2.3.)]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돌봄시설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7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나. 기타사항

- 추진일정안
 - 2022. 5.~7.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022. 6.~8. : 리모델링 설계·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 2022. 9. :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마포구8·9호점 개소(예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점검·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점검·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 설치·운영 등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